

입법예고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
시행령」 일부개정안

2023. 12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  
(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)

## 1. 개정이유

농어업경영체법이 일부 개정(2024.2.17.시행)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및 거짓 증명·확인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등록정보 조사에 활용하는 농지·농업법인, 양식·수산종자·소금산업 등의 행정정보 확대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, 세부 기준은 ‘고시’로, 등록기준 증명서류 등은 ‘부령’으로 위임(제2조의2, 제2조의3 신설)
- 나. 등록정보 조사를 위한 농지대장·농지은행의 농지정보, 가축·양봉·곤충사육 허가·등록·신고정보, 초지 실태조사 및 농업법인 정보, 양식·수산종자·관상업·소금산업의 면허·허가·신고 추가(제4조 개정)
- 다. 법률로 이관되는 농어업법인 종합정보시스템 포함사항 내용을 삭제하고, 법률에서 위임된 보조금 내용 신설(제20조의9제1항 개정)
- 라. 등록정보 실태조사 및 고시 마련 권한을 등록기관장에게 위임(제22조제1항 개정)
- 마. 등록정보 중 보조금 신청정보 삭제 및 세대원을 농업인으로 한정(별표 1 개정)
- 바. 거짓·부정으로 확인·증명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(별표 3 개정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)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(중복된 농지는 제외하고, 여러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별 면적을 합산한다)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경영정보일 것

가. 「농지법」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등록된 농지

나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 수탁된 농지

다.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원(權原)이 확보된 농지

2.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·곤충을 사육하는 등의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)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경

영정보일 것. 이 경우 농산물은 해당 농업인의 계산과 책임(생산요소 등의 선택·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·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)으로 생산되는 것이어야 하며, 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의 규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.

3.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 신고 및 등기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정보일 것

4.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 신고 및 등기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정보일 것

②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2조의3(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)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어업·양식업 경영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(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)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어업인의 경영정보일 것. 이 경우 수산물은 해당 어업인의 계산과 책임(어업면허·허가·신고하에 생산 수산물의 판매·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)으로 생산되는 것이어야 한다.

2. 어업면허·허가·신고하에 연간 60일 이상 어업·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의 경영정보일 것

3.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 신고 및 등기한 영어조합법인의 경영정보일 것

4.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 신고 및 등기한 어업회사법인의  
경영정보일 것.

② 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 방법  
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의2제1항제5호”를 “법 제6조의2제1항제  
6호”로, “법 제5조제1항”을 “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 
제7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농지법」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등록정보

8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19조에 따른 임대차한 농지,  
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환 또는 분리·합병한 농지, 같은 법 제24조의  
4에 따른 농지 임대 수탁한 농지에 관한 정보

9.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종축업·부화업·가축사육업의 허가에 관한  
정보

10.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 
등록에 관한 정보

11.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곤충사육업  
신고에 관한 정보

12. 「초지법」 제2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

13.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  
립신고·변경신고·해산신고에 관한 정보

14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 및 43조에 따른 면허양식업 및 허가양식  
업에 관한 정보

15.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 제21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한 정보

16. 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

17. 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2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한 정보

제20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20조의5제2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제22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”을 “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실태조사

5.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시

제22조의2제1호의2 중 “법 제4조제3항”을 “법 제4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 제2호 중 “세대원”을 “세대원(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)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의2 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표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비고 제1호 전단 중 “제1호 본문”을 “제1호”로 하며, 같은 비고 제2호 본문 중 “제1호 단서”를 “제2호”로 한다.

2.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의 기간에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과징금 금

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별표 3 제1호가목 각 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별표 3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별표 3 제2호나목(중전의 가목) 위반행위란 나목 중 “법 제4조”를 “법 제5조 제3항”으로, 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한”을 “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한”으로 하고, 같은 란 중 “제1항제1호”를 “제1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호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2호”를 “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2조의2(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)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</p> <p><u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(중복된 농지는 제외하고, 여러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별 면적을 합산한다)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경영정보일 것</u></p> <p><u>가. 「농지법」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등록된 농지</u></p> <p><u>나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5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는 행사업을 통해 임대 수탁된 농지</u></p> <p><u>다.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</u></p> |

를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  
관의 장으로부터 사용할  
수 있는 권원(權原)이 확보  
된 농지

2.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·

곤충을 사육하는 등의 농업경  
영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(「농  
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 
법」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  
물을 말한다)의 연간 판매액이  
12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농  
업인의 경영정보일 것. 이 경  
우 농산물은 해당 농업인의 계  
산과 책임(생산요소 등의 선택  
· 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 
판매·처분권 등을 실질적으  
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)으로  
생산되는 것이어야 하며, 농작  
물 재배 및 가축사육의 규모  
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  
시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.

3.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

라 설립 신고 및 등기한 영농  
조합법인의 경영정보일 것

4.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

라 설립 신고 및 등기한 농업

<신 설>

회사법인의 경영정보일 것

②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2조의3(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)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어업·양식업 경영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(「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)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어업인의 경영정보일 것. 이 경우 수산물은 해당 어업인의 계산과 책임(어업면허·허가·신고하에 생산 수산물의 판매·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)으로 생산되는 것이어야 한다.

2. 어업면허·허가·신고하에 연간 60일 이상 어업·양식업

제4조(등록정보의 조사·확인)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조사·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을 경영하는 어업인의 경영정보일 것

3.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 신고 및 등기한 영어조합법인의 경영정보일 것

4.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 신고 및 등기한 어업회사법인의 경영정보일 것.

② 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등록정보의 조사·확인) --  
-----  
-----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-----  
-----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「농지법」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등록정보

<신 설>

8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19조에 따른 임대차한 농지,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환 또는 분리·합병한 농지,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 수탁한 농지에 관한 정보

<신 설>

9.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종축업·부화업·가축사육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

<신 설>

10.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에 관한 정보

<신 설>

11.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곤충사육업 신고에 관한 정보

<신 설>

12. 「초지법」 제2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

<신 설>

13.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신고·변경신고·해산신고에 관한 정보

<신 설>

14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 및 43조에 따른 면허양식업 및 허가양식업에 관한 정보

<신 설>

15.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 제

<신 설>

<신 설>

제20조의9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·변경신고·해산신고에 관한 사항
2. 법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
4.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
5. 법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
21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한 정보

16. 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

17. 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2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한 정보

제20조의9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법 제20조의5제2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## 6.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 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  
법인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  
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 
사항

② (생략)

제22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 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 
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 
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 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 
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 
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 
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 
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  
게 위임한다.

## 1. (생략)

2.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 
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  
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

<신 설>

3. ~ 4. (생략)

## 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-

[illegible]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  
지-----  
-----

## 2의2.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

### 정보의 실태조사

3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 
고시]

② ~ ④ (생 략)

제22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  
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
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  
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  
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 
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
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  
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 
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  
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 
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(생 략)

1의2.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농  
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관리  
에 관한 사무

2. (생 략)

3. 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  
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 
관한 사무

4. 삭 제

5. (생 략)

[별표 1]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 
정보(제2조제1항제1호 관련)

1.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법 제4조제4항-----  
-----  
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5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 
정보(제2조제1항제1호 관련)

1. (현행과 같음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2.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 관한 정보</p> <p>3.~4. (생략)</p> <p>5. 다음 각 목의 지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정보</p> <p>가.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</p> <p>나.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</p> <p>다. 삭제</p> <p>6.~10. (생략)</p> <p>[별표 1의2]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(제20조의8제1항 관련)</p> <p>1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업법인이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. 다만,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</p> | <p>2.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(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)에 관한 정보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&lt;삭제&gt;</p> <p>6.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1의2]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(제20조의8제1항 관련)</p> <p>1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업법인이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.</p> <p>&lt;삭제&gt;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경우에는 그 농업경영의 기간에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.

<신 설>

## 2. (생략)

비고

1. 제1호 본문에 따른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농지 취득 시 실거래가격과 양도 시 실거래가격의 차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농지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취득 시 실거래가격은 해당 농지 취득 시의 실거래가격 총액에 양도가 이루어진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2. 제1호 단서에 따른 정상지가상

2.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의 기간에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비고

1.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농지 취득 시 실거래가격과 양도 시 실거래가격의 차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농지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취득 시 실거래가격은 해당 농지 취득 시의 실거래가격 총액에 양도가 이루어진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2. 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

승분은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값으로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농업경영을 개시하거나 종료한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값으로 하되, 그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값으로 한다.

### 3. (생 략)

[별표 3] 과태료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#### 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결과 및 그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

용한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값으로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농업경영을 개시하거나 종료한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값으로 하되, 그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값으로 한다.

### 3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3] 과태료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#### 1. -----

가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-----

<신 설>

| 위 반 행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<br>법 조 문   | 과 태 료 금 액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 회       | 2 회      | 3 회<br>이 상<br>위 반 |
| 가. 거짓이나 그 밖<br>의 부정한 방법<br>으로 법 제4조<br>에 따른 농어업<br>경영정보를 등<br>록하거나 변경<br>등록한 경우 | 법 제3조 제1항 제1호 | 25만<br>원  | 50만<br>원 | 100<br>만원         |
| 나. 법 제5조제2항<br>의 현지조사를<br>정당한 사유 없<br>이 거부·기피<br>또는 방해한 경<br>우                  | 법 제3조 제1항 제2호 | 25만<br>원  | 50만<br>원 | 100<br>만원         |
| 다.~바.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| 위 반 행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<br>법 조 문            | 과 태 료 금 액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 회       | 2 회      | 3 회<br>이 상<br>위 반 |
| 나. -----<br>-----<br>----- 법 제5조<br>제3항-- 자료<br>를 확인 또는<br>증명한 -----<br>----- | 법<br>제3조<br>제1항제<br>2호 | 25만<br>원  | 50만<br>원 | 100<br>만 원        |
| 가.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<br>제3조<br>제1항제<br>1호 | 25만<br>원  | 50만<br>원 | 100<br>만 원        |
| 다. ~ 바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